

法律知識

廢棄物管理法

第1章 總 則

第1條(目的) 이 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清潔히 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과 環境保全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(正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正義는 다음과 같다.

1. “廢棄物”이라 함은 쓰레기 · 재 · 汚泥 ·糞尿 · 廢油 · 廢酸 · 廢알카리 · 動物의 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.
2. “一般廢棄物”이라 함은 사람의 日常生活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· 糞尿 등 產業廢棄物 외의 廢棄物을 말한다.
3. “產業廢棄物”이라 함은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汚泥 · 殘滓物 · 廢油 · 廢酸 · 廢알카리 · 廢고무 · 廢合成樹脂 등 廢棄物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糞尿處理施設”이라 함은 糞尿를 최종적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.
5. “糞尿净化槽”라 함은 糞尿를沈澱 · 分解 등의 방법에 의하여 净化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.
6. “쓰레기 處理施設”이라 함은 埋立 · 燃却 · 再生分類 · 堆肥化등의 方法에 의하여 쓰레기를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.
7. “污水净化施設”이라 함은 糞尿와 生活下水를 함께 처리하는 净化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.
8. “產業廢棄物處理施設”이라 함은 埋立 · 燃却 · 分解 · 中和 · 시멘트 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產業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.

却 · 分解 · 中和 · 시멘트 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產業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.

9. “畜產廢水淨化施設”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.

第3條(適用範圍) 이 法은 原子力法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.

第2章 一般廢棄物

第9條(特別清掃地域) ① 서울特別市 · 直轄市 · 市 또는 邑의 地域을 特別清掃地域으로 한다. 다만,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· 直轄市長 · 市長 郡守(이하 “市長 · 郡守”라 한다)가 지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.

② 郡守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面의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 特別清掃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特別清掃地域안의 土地 · 建物의 所有者 · 占有者 또는 管理者は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便所 및 쓰레기用器를 設置하여 이를 衛生의 으로 유지 · 管理하여야 한다.
2. 서울特別市 · 市 · 郡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쓰레기를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3. 市長 · 郡守가 행하는 一般廢棄物의 처리에 적극 努力하여야 한다.

第15條(污水淨化施設 · 糞尿净化槽등의 設置)
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共同住宅團地 기타 이에 準하는 地域내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建物기타 施設物에는 單獨 또는 共

同으로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.

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에는
糞尿淨化糟를 設置하여야 한다.

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產施設을 設置하고
자 하는 者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
야 한다.

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
淨化施設 · 糞尿淨化糟 또는 畜產廢水淨化施
設을 設置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
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 · 郡守에게 申告하여
야 한다.

⑤ 汚水淨化施設 · 糞尿淨化糟 또는 畜產廢水
淨化施設의 設置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할
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市長 · 郡守의 竣工検査를 받아야 한다.

⑥ 環境保全法第15條의 3의 規定에 의한 防
止施設로서 同法第15條의 4의 規定에 環境
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동일 事業場
에서 排出되는 糞尿 · 生活下水 또는 畜產廢
水와 廢水를 併合處理하는 防止施設을 設置
한 事業場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
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· 糞尿淨化糟 또
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.
⑦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
化施設 · 糞尿淨化糟 및 畜產糞尿淨化施設의
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.

第16條(污水淨化施設 · 糞尿淨化糟등의 管理)

① 汚水淨化施設 · 糞尿淨化糟 또는 畜產廢
水淨化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施設
의 內部清掃를 하는 등 保健社會部令이 정하
는 管理基準에 따라 당해 施設을 유지 · 管理
하여야 한다.

② 市長 · 郡守는 汚水淨化施設 · 糞尿淨化糟
및 畜產廢水淨化施設이 그 設置基準 또는 管
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· 管理되
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
당해 施設의 改修 · 사용제한 · 사용금지 기타

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.

③ 市長 · 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
상의 汚水淨化施設 · 糞尿淨化糟의 所有者 ·
또는 管理者가 그 施設의 內部清掃를 하지
아니하여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
을 받고도 內部清掃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
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
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.

④ 市長 · 郡守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汚水
淨化施設 · 糞尿淨化糟 및 畜產廢水淨化施設
이 設置된 建物 기타 施設物에 出入하여 그
管理狀態를 檢查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
出入 · 檢查를 하는 者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
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内보여야 한다.

第17條(一般廢棄物施設 設計 · 施工業) ① 糞
尿處理施設 · 쓰레기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
施設의 設計 · 施工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
設計 · 施工業者가 아니면 設計 · 施工을 할
수 없다. 다만,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
우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環境聽長의 승인을 얻으 設計 · 施工하는 때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事業場을 경영하는 者가 자기의 事業장에
서 排出되는 糞尿 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
위하여 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處理施設
을 設置하는 경우

2. 建築主가 자기의 建築物의 汚水淨化施設
을 設置하는 경우

3.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경우

② 第1項 但書의 경우 環境聽長은 保健社會
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
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糞尿處理施設 · 쓰레기處理施設 또는 汚水
淨化施設의 設計 · 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
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
施設 · 裝備 ·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
聽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 登錄한 사항중
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

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·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·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영농지역을 管轄하는 市·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 登錄한 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⑤第12條의 規定은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·施工業의 登錄에 이를 準用한다.

第5章 捕則

第34條(產業廢棄物의 輸入制限要請) 環境廳長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產業廢棄物의 輸入을 제한하여 줄 것을 商工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第35條(家畜飼育의 제한 등) ①市長·郡守는 生活環境의 보전 및 國民保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家畜의 飼育을 제한할 수 있다.
②市長·郡守는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生活環境의 보전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家畜의 飼育者에 대하여 畜舍의 移轉 기타 危害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하고자 할 때에는 6月以上의 移轉구상 期間을 주어야 하며, 移轉에 따른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第36條(糞尿使用의 제한) ①特別清掃地域안에서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糞尿를 肥料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市長·郡守는 特別清掃地域에서 營農者로

하여금 糞尿를 肥料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게 糞尿를 처리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第6章 副則

第43條(罰則)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1. 第11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業 또는 쓰레기 處理業을 한 者
 2. 第14條第2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 處理施設을 設置한 者
 3.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할 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
 4. 第17條第3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施設·쓰레기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·施工을 業으로 한 者
 5. 第18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糞尿淨化槽의 製造를 業으로 한 者
 6. 第18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產業廢棄物의 처리를 業으로 한 者
 7. 第26條第2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
-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1.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
 2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業 또는 쓰레

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

3. 第11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糞尿收集·運搬業, 쓰레기收集·運搬業, 净化槽清掃業을 한 자
4. 第11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糞尿處理·쓰레기處理業의 許可事項을 變更한 자
5. 第14條第2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자
6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第3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자
7. 第17條第3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자
8. 第17條第4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粪尿净化槽 또는 畜産廢水净化施設의 設計·施工을 業으로 한 자
9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1項 的 規定에 의한 粪尿净化槽 製造業의 登錄을 한 자
10. 第18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자
11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4條第1項 的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業 허가를 받은 자
12. 第24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 產業廢棄物處理業 許可事項을 變更한 자
13. 第26條第2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자
14.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자
③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处한다.
 1.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廃棄物을 처리한 자
 2.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자
 3.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再生·이용을 目的으로 產業廢棄物을 처리한 자
15. 第11條第1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粪尿收集·運搬業, 쓰레기收集·運搬業, 净化槽清掃業 허가를 받은 자
16. 第11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 粪尿收集·運搬業, 쓰레기收集·運搬業, 净化槽清掃業 訸可를 받은 자
17. 第11條第1項 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 粪尿收集·運搬業, 쓰레기收集·운搬業, 净化槽清掃業 訸可事項을 變更한 자
18.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料金을 받은 자
19. 第13條(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자
20.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자
21.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粪尿净化槽 또는 畜産廢水净化施設을 説值할 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한 자
22. 污水净化施設에 관한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자
23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第4項 前般의 規定에 의한 粪尿净化槽·畜産廢水净化施設의 設計·施工業登錄을 한 자
24. 第17條第4項後般의 規定에 의한 许可를 받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자
25.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자
26.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자
27.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자
28.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再生·이용을 目的으로 產業廢棄物을 처리한 자
29.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자

한 者

18. 第27條의 规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두
지 아니한 者

19. 第35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
한 者

第45條 (過怠料) ①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
대하여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.

1. 第6條第1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
物을 버린 者

2. 第11條第4項 또는 第24條第2項의 规定에
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에 위반한 者

3. 黱尿净化槽 및 畜產廢水净化施設에 관한
第16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
者

4. 第16條第4項 또는 第31條의 规定에 의한
検査를 거부·기피·방해한 者

5. 第31條의 规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
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

6. 第18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되자
아니한 者가 製造한 黱尿净化槽를 판매한
者

7. 第21條第1項第3號, 第21條第3項, 第25條,
第29條 또는 第30條의 规定을 위반한 者

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
5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.

1. 第9條第3項第1號의 规定에 위반한 者

2. 第15條第4項의 规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
아니한 者

3. 第15條第5項의 规定에 의한 竣工検査를
받지 아니하고 污水净化施設·黛尿净化槽
·畜產廢水净化施設을 사용한 者

4. 第16條第1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處理容
量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污水净化施設
·黛尿净化槽 또는 畜產廢水净化施設의 管
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한 者

5. 第36條第1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黛尿를
肥料로 사용한 者

③ 第16條第1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處理容

量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污水净化施設 ·
黛尿净化槽 또는 畜產廢水净化施設의 管理
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한 者에 대하여는 2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.

附 則

第1條(施行日)이 法은 1987年4月1일부터 施
行한다. 다만, 第27條의 规定은 公布后 1年
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◇ 廃棄物管理法 制定理由

環境保全法과 汚物清掃法으로 二元化 되어 있
는 廃棄物 (黛尿, 쓰레기, 產業廢棄物)의 管理
에 관한 사항을 單一法에 規定하여 廃棄物의
性狀 및 特性에 따른 管理를 強化하고, 環境廳
及 市·道知事로 하여금 廃棄物處理에 관한
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하여 廃棄物을 걱정하
게 管理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◇ 主要骨子

가. 廃棄物을 一般廢棄物과 產業廢棄物로 구
분하여 產業廢棄物의 것은 一般廢棄物로
분류하여 그 管理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
(法 第2條)

나. 市長·郡守를 하여금 一般廢棄物處理施設
의 設置·運營등 一般廢棄物處理事業을 수
행하도록 하고 市·道知事로 하여금 管轄
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
을 할 수 있도록 하여 廃棄物處理에 걱정

다. 環境廳 및 市·道知事로 하여금 廃棄物
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함
(法 第8條)

- 라. 黯尿收集 運搬業, 쓰레기收集·運搬業, 黯尿處理業, 凈化槽清掃業등 一般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·郡守의 許可를 받도록 함 (法 第11條)
- 마. 黯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도록 함 (法 第11條)
- 바. 일정規模 이상의 畜產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도록 함 (法 第15條)
- 사. 產業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場을 경영하는

- 者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도록 함 (法 第21條)
- 아. 國家 또는 市·道知事등은 產業廢棄物의 廣域處理를 위한 處理施設을 設置·운영할 수 있도록 함 (法 第23條)
- 자. 產業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도록 함 (法 第43條)
- 차. 일정규모 이상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·운영하는 者는 施設의 유지·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시키기 위한 技術管理人을 두도록 함 (法 第27條)

◎ 환경청공고 제86-8호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및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6년12월26일

환경청장

1. 법령명 :

폐기물관리법시행령(안)

2. 주요내용

- 가.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수반한 “다량”의 쓰레기의 범위를 정함 (안 제3조).
- 나.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“일정규모”이상의 시설물을 정함 (안 제4조).
- 다. 분뇨정화조 설치대상시설물을 정함 (안 제5조).
- 라.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인 ‘일정규모’ 이상의 축산시설을 정함 (안 제6조 및 별표 1).
- 마.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중 내부청소에 관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(안 제7조).
- 바.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 시

설을 정함 (안 제8조).

- 사. 교육대상인 폐기물처리 담당자를 정함 (안 제10조).
- 아. 시·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업무를 정함 (안 제12조).
- 차. 기타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(안) 문문 참조.
- 3.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87년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청장 (참조 : 폐기물관리국장 423-4037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나.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주소)

폐기물 관리법 시행령(안)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6조 (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